

# 공 주 시

시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582호 2015. 12. 1.(화)

선	기관의 장
람	

- 【조 례】
- 【규 칙】
- 【훈 령】
- 【예 규】
- 【고 시】

제2015-167호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	1
제2015-168호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	12
제2015-171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	15
제2015-172호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	17
제2015-173호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	19

【공 고】

제2015-1634호	공주시 고문번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
제2015-1659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8
제2015-1666호	공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40
제2015-1669호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	49
제2015-1672호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56
제2015-1673호	공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64
제2015-1674호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76
제2015-1677호	2015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	80
제2015-168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81

회 람							
--------	--	--	--	--	--	--	--

발행 공주시 (편집 시정담당관 ☎ 840-2051)

## 《 시 보 발 행 안 내 》

본 「시보」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2조, 제13조 및 공주시보 발행규정에 의거 조례, 규칙, 훈령, 예규의 제정 및 개·폐사항, 인사, 공고, 고시, 의회의 집회, 개회, 휴회 및 회기의 연장, 의사내용 등을 게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월(1일, 15일) 2회 또는 수시 발행되오며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배부는 시산하 행정기관 및 이·통장님에게 배부됩니다.  
이·통장님께서서는 본 「시보」에 게재된 내용을 이웃 등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별도 편철 하시어 1년 동안 보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고시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공주시 고시 제2015-160호)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충청남도 공주시 기업경제과 (☎041-840-829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 11. .

공 주 시 장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I. 산업단지 개요(변경없음)

1. 단 지 명 : 유구자카드 일반산업단지
2. 관리기관 : 공 주 시
3. 관리권자 : 공 주 시 장
4. 조성목적
  - 유구소도읍 육성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어진 중책사업으로, 사양국면을 맞고 있는 섬유직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낙후된 유구지역의 개발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

## 5. 조성개요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읍 백교리 601번지 일원
- 면적 : 95,910.9㎡(신국도 32호선 포함)
- 사업시행자 : 공주시장
- 사업기간 : 2008년 ~ 2010년

Ⅱ.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 87,789.8㎡(변경없음)

Ⅲ.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변경없음)

### 1. 입주대상업종(변경없음)

- 변경 : 13. 섬유제품제조업 ; 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24. 1차금속제조업
- 28. 전기장비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업종은 불허함

### 2. 입주기업체의 자격(변경없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중 같은법 시행령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격을 갖춘 자로 같은법 제38조(입주계약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IV. 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

##### 1. 용도별 구역면적(변경없음)

구 분	합 계	산업시설 구 역	지원시설 구 역	공공시설 구 역	녹 지 구 역	기 타 (신국도32)
면적(m <sup>2</sup> )	87,789.8	60,980.5	-	26,809.3	-	8,121.1
구성비(%)	100.0	69.5	-	30.5	-	-

##### 2. 용도별 구역의 관리처분 계획(변경)

구 분	면 적(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87,789.8	-	87,789.8	100.0		
산업시설구역	60,980.5	-	60,980.5	69.5	분양계획에 따라 처분	
공 공 시 설 구 역	소 계	26,809.3	-	26,809.3	30.5	시설물을 관리할 지방자치단체(공주시)에 무상귀속
	도 로	17,986.6	-	17,986.6	20.5	
	완 충 녹 지	5,977.4	감)975.8	5,001.6	5.7	
	공 공 공 지	231.1	증)975.8	1,206.9	1.4	
	주 차 장	2,066.2	-	2,066.2	2.3	
	하 천	548.0	-	548.01	0.6	

기타(신국도 32호선부지)	8,121.1			-	대전지방 국토관리청 관리
-------------------	---------	--	--	---	------------------

## V. 업종별 공장의 배치(변경없음)

### 1. 유치업종 배치계획

구분	유치업종	면적(m <sup>2</sup> )	비율(%)	업체수
	합 계	60,980.5	100.0	
기정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28,149.1	46.2	9
기정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11,050.5	18.1	3
기정	13. 섬유제품제조업;의복제외 (134 섬유제품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제외) 24. 1차금속제조업 28. 전기장비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별표5의 폐수배출관련 업종은 불허함	21,780.9	35.7	6

## VI.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변경없음)

### 1. 용수공급계획

구 분		총용수량 (m <sup>3</sup> /일)	공업용수 (m <sup>3</sup> /일)	생활용수 (m <sup>3</sup> /일)	비 고
용수량	기 정	260.7	236.9	23.8	실수요자관리

### 2. 하수처리계획

구 분		생활용수량 (m <sup>3</sup> /일)	유수·오수 화율(%)	지하수량 (m <sup>3</sup> /일)	총오수량 (m <sup>3</sup> /일)	비 고
오수발생량	기 정	23.8	90	2.2	21.5	실수요자관리

### 3. 전력공급계획

구 분		총수요량 (MWh/년)	생산시설	공공시설 (도로, 주차장)	비 고
연간전력 수 요 량	기 정	23,337	23,154	183	실수요자관리

### 4. 통신공급계획

구 분		총수요량 (회선)	산업시설	공중전화	비 고
통신수요	기 정	31	29	2	실수요자관리

### 5. 에너지공급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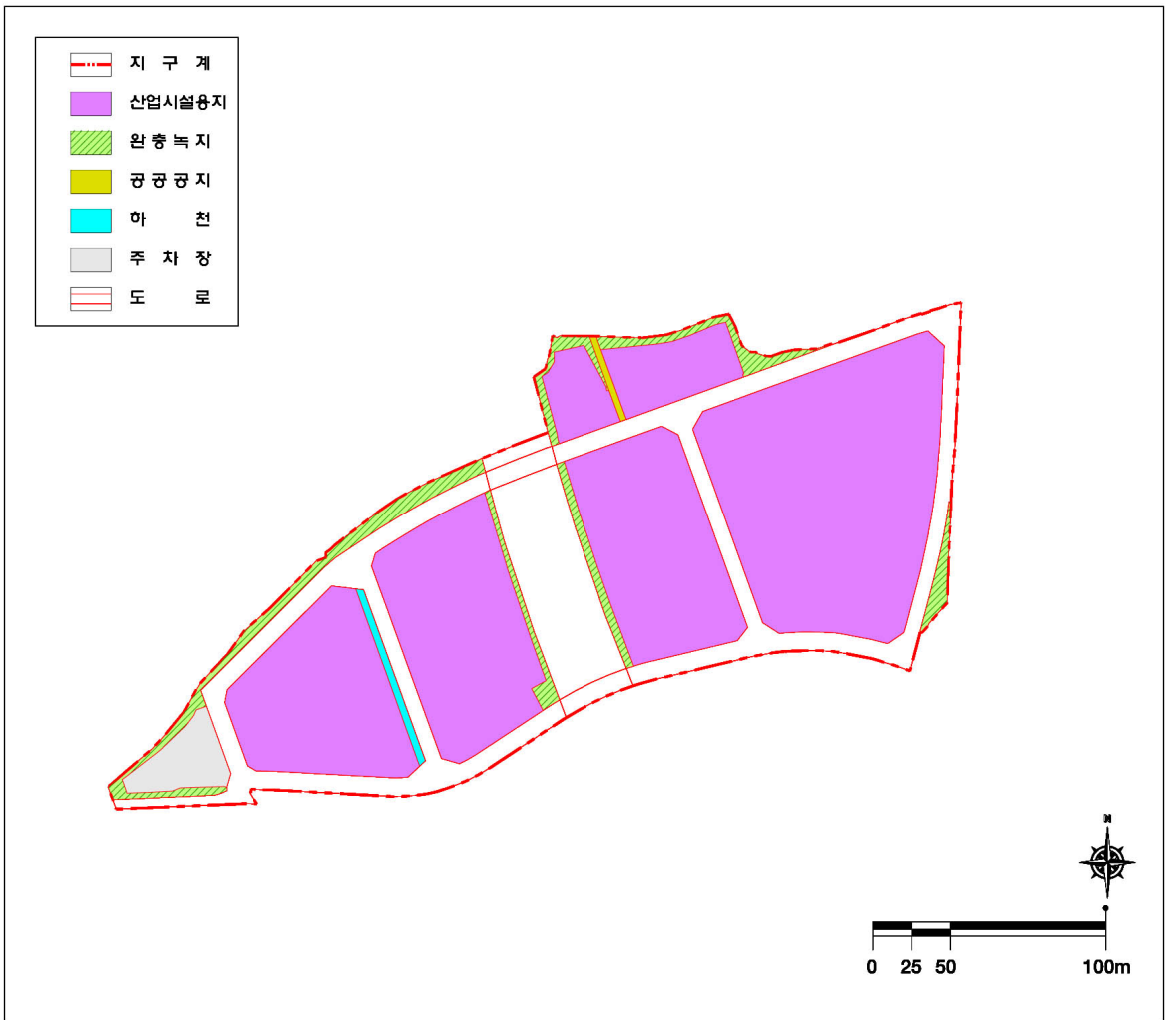
구 분		총수요량 (Gcal/년)	직접열	간접열	비 고
연간열수요량	기 정	32,521	9,516	23,005	실수요자관리

## Ⅶ.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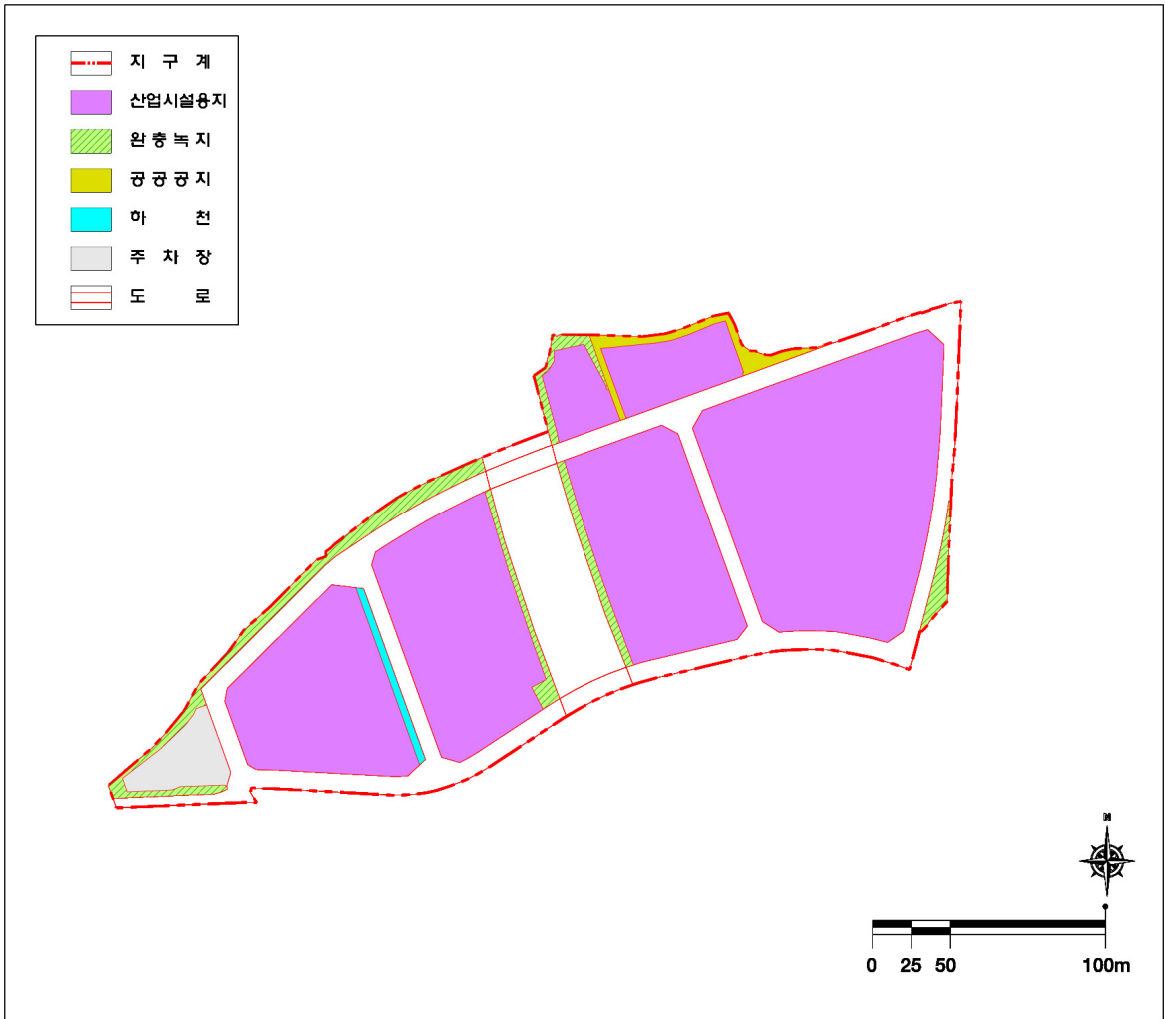
- 산업시설구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의거 처분계획(분양계획)에 의해 분양하며, 공공시설구역은 같은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공주시에 무상 귀속된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산업시설구역의 최소분할 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하며, 건축물이 있는 산업시설구역의 최소분할 면적은 150㎡ 이상으로 한다.
- 산업시설구역의 건축물 용도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한하고 공공시설구역 중 주차장용지의 건축물 용도는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에 한하며,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250%이하 건축물 높이 5층 이하로 한다.(단, 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조례(2005.09.15. 조례 제519호)에 의거 건폐율·용적률은 공주시 도시계획조례 기준의 10%미만 범위안에서 완화 적용 가능함)
- 세부 관리계획은 공주시 기업경제과(☎041-840-8292)에 비치하고 게재 생략하며, 본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른다.

<별첨1>

토지이용계획도(기정)



# 토지이용계획도(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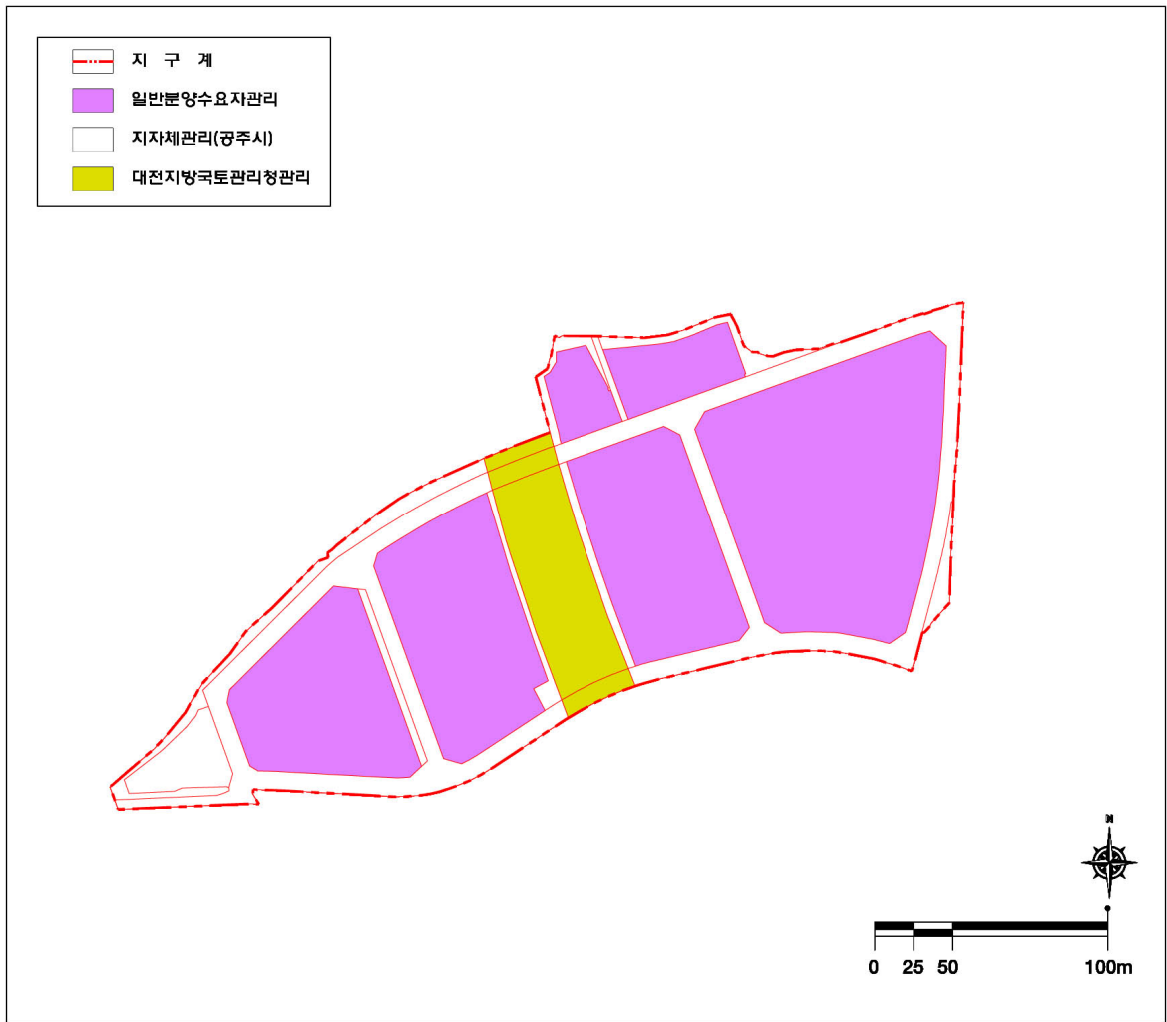
<별첨2>

용도별구획도(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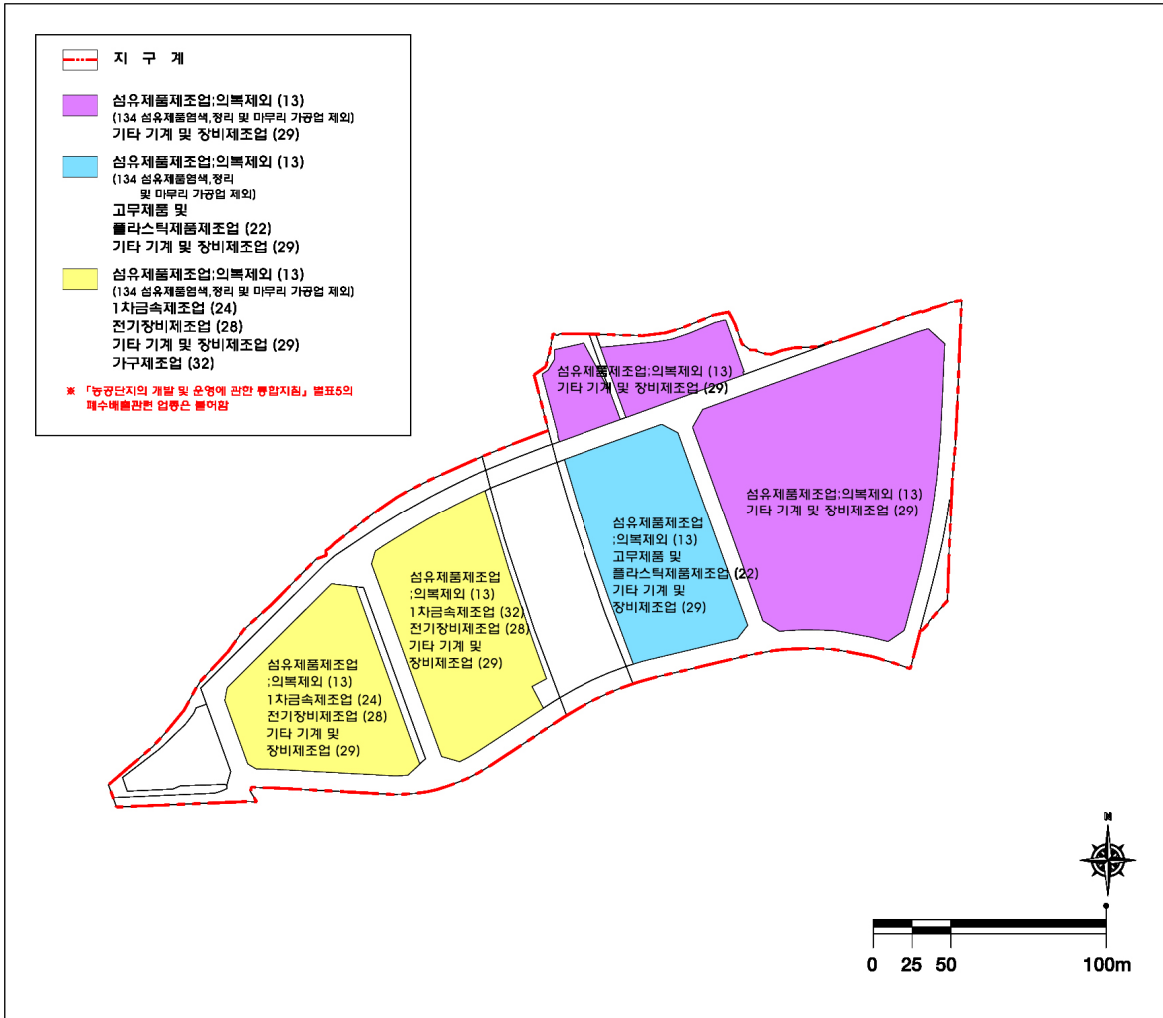
<별첨3>

관리처분계획도(변경없음)



<별첨4>

업종배치계획도(변경없음)



#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유구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하천법」 제27조,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계획(변경)과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91조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12월 1일

## 공 주 시 장

### 1. 하천공사의 명칭

-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 2. 하천공사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기성제 보강 및 하천정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유구천 유역의 농토 및 인가를 홍수피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 개 요 : 하천정비 L=6.2km, 교량 3개소, 축제공, 호안공, 부체도로공

### 3. 하천공사 시행지역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유마교 하류 ~ 공주시 신평면 백룡리

### 4.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명 칭 : 공주시장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

### 5. 하천공사의 착수 및 준공예정년월일

- 착 수 일 : 2014. 06. 01      - 준공예정년월일 : 2018. 12. 31.

6. 수용하거나 사용할 물건 또는 관리에 관한 명세

- 계제생략 (토지 및 지장물 세목조서는 안전관리과에 비치)

7. 설계도서(공사예정공정표) : 안전관리과에 비치

8. 도시관리계획(방재시설:하천)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

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유구천	지방 하천	유구리 구역계	백교리 구역계	유구교 유마교	2.7	-	219,900	98.12.1	
변경	1	유구천	지방 하천	유구리 구역계	백룡리 구역계	유구교 유마교	7.7	94~187	999,616		

나.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결정사유
1	유구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 변경</li> <li>- 연장 : 2.7km → 7.7km</li> <li>- 면적 : 219,900㎡ → 999,61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구천 하천정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도시계획시설(하천) 변경</li> </ul>

9. 도시계획시설사업(방재시설:하천) 실시계획인가

-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공주시 유구읍 유마교 하류 ~ 공주시 신평면 백룡리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하천)사업
- 명칭 : 유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다. 사업의 면적 : 860,107㎡

라. 사업시행자 주소 및 성명 : 공주시장 (공주시 봉황로 1)

마. 사업기간 : 2014. 06. 01 ~ 2018.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

- 계제생략 (하천사업시행 편입세목조서로 같음함. 안전관리과에 비치)

## 10.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비고
사업비	39,790	16,732	4,340	18,718	

### 11. 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하천명 : 유구천 (지방하천)
- 위치 및 사업규모 : 상기와 같음

### 12. 폐천부지 등의 발생예상면적 : 없음

1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주시 안전관리과,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1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안전관리과 (☎041-840-86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시 신축 건물 및 도로명 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상촌길 65 (봉정동) 외 2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세부내역

순번	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자	도로명부여사유
1	충청남도 공주시 봉영동 534-3	충청남도 공주시 산북길 65 (봉영동)	신축	20000112	마을이 목록에 처리되었으므로 생긴 지연미를 영정 활용
2	충청남도 공주시 무룡동 206	충청남도 공주시 무룡동길 104 (무룡동)	신축	20110906	해당 지연미를 영정 활용
3	충청남도 공주시 신곡동 609-5	충청남도 공주시 한치2길 27-20 (신곡동)	신축	20000112	지연미를 영정고 용인번호 부여 핵심 활용
4	충청남도 공주시 괴룡동 240-6, 503-11, 240-30	충청남도 공주시 괴룡로 668 (괴룡동)	신축	20000202	지역별 반영
5	충청남도 공주시 괴룡동 118-12	충청남도 공주시 인수현로 66-6 (괴룡동)	신축	20000202	도로의 끝지점에 주소가 없고 마을주민 모두 그 연수현을 가는데 길은 인삼, 연수현길로 부여
6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방교리 77-7, 75-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방교리 140	신축	20000112	이웃 주소지간이 이 마을을 향하여 도로를 향하여 주소는 매, 사설은 불은 갈라지기가 아니었고, 이직을 할 시합들이 그 주소지간을 무시하고도 용인하였기에 주소지대로 부여
7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유구리 463-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로 유구리 93-9	신축	20000112	유구로에서 마다리를 향하는 도로로 행정구역 변경과 마다리의 영향을 활용하여 유구리사대로 부여
8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유구리 47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로 문화동길 7	신축	20000202	이 지역에 새로운 마을이 형성되었고 그 마을이름이 문화동이라 하여 유구리사대로 부여
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유구리 464-9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로 문화동길 14-6	신축	20000112	도로의 끝지점이 유구리사대 방향을 향한다 하여 유구리사대로 부여
10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유구리 296-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로 개산로 460	신축	20090625	개산로를 지나는 도로로 고유명칭 활용
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연흥리 9-2, 9-4, 9-3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로 연흥길 106	신축	20000112	연흥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변경을 활용하여 연흥길로 부여
12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동 새동리 21-1	충청남도 공주시 유구로 새동길 304-10	신축	20111205	새동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변경을 활용
13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방양리 272-12	충청남도 공주시 이인면 방양길 1-12	신축	20000112	방양리를 관통하는 길이라 방양길로 부여
1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내룡리 신10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통학길 91-102	누락	20000112	마을위행령의 시행이라 인촌길 크게 불리는 마을이라 하여 생긴 지연미를 영정 활용
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관덕리 65-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관덕사로 122	신축	20000112	관덕리에서 계룡산 신원사로 가는 길로 신원사대로 부여
16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화원리 199-2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구대사로 74-13	신축	20000112	인근에 영구대사묘가 있어 영구대사로 부여
1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불곡리 42-1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구대사로 1	신축	20000112	인근에 영구대사묘가 있어 영구대사로 부여
1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불곡리 42-5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구대사로 1-1	신축	20000112	인근에 영구대사묘가 있어 영구대사로 부여
19	충청남도 공주시 비포동 공양리 295-1	충청남도 공주시 비포면 공양대길 12	신축	20000202	새마을 01과 형성된 길이라 비포면 부여 후, 다른 지역과 중복되는 도로명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구역 변경을 참가
20	충청남도 공주시 비포동 학동리 116-2	충청남도 공주시 비포면 학동길 27-20	신축	20000112	비포동 고개 아래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영구대사대로 영정 활용
2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5-31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길 40-4	신축	20000112	오인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행정구역 변경을 활용하여 오인길로 부여
22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97-1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동대성길 113-42	신축	20000112	인동리와 태성리를 관통하는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을 활용하여 인동대성길로 부여
23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태성리 214	충청남도 공주시 정안면 인동대성길 215	누락	20000112	두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24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인양리 296-13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용강인동로 388-1	신축	20000112	지연미를 영정 반영
25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리 246-6, 246-3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신영인동길 38-10	신축	20000112	조선시대 후 이리쪽에 단룡역이 있었다 하여 단룡길로 부여
26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고당리 370-12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단룡길 104	신축	20000112	조선시대 후 이리쪽에 단룡역이 있었다 하여 단룡길로 부여
27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태룡리 641	충청남도 공주시 신봉면 태룡조룡길 154-44	신축	20000112	태룡리와 조룡리를 관통하는 주 도로로 두 지역의 행정구역 변경 활용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우리시 도로명주소 부여건물 중 도로명 주소 변경 부여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에 따라 변경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계룡면 갑골길 36-59 외 4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 세부내역

중점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57-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57-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골길 36-59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골길 36-59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57-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57-8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골길 36-61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골길 36-61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57-4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757-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골길 36-63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간골길 36-63	2010.01.12	해당 자연마을 명칭 활용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60-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60-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39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392	2009.08-25	계룡시의 주도로인 계룡대 반영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60-1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60-13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392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392-1	2009.08-25	계룡시의 주도로인 계룡대 반영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

우리시 건물등의 멸실에 따라 도로명주소 폐지 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제25조 따라 폐지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1. 25.

공주시장

- 도로명주소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오인길 40-4 외 1건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자	폐지 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청 토지과(☎840-8480)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5. 11.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참고사항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등에 의거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 세부내역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폐지사유	비고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리 35-32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오인길 40-4		건물말소	2015.11.20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경천리 62-7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123		건물말소	2015.11.24

공주시 공고 제 2015- 1634호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 44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 월 1 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그동안 고문변호사를 2명으로 운영하여 왔으나, 복잡하고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고
-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를 대법원 규칙 등에 맞게 현실화하고
- 공주시(공주시장)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대리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수임료 (승소사례금)를 「공주시 소송사무 처리 규정」에 의하여 추진하였으나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률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5명으로 증원(안 제2조)
- 소송심의위원회 설치(안 제5조)
  - ⇒ 중요소송 등 종합적인 심의기구 설치
- 소송수수료를 별표로 규정(안 제6조)

⇒ 기존 훈령에서 조례로 규정.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2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산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기획담당관실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2031, FAX : 041) 840-2306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2명” 을 “5명” 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처리한다” 를 “직무를 수행한다” 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중요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
2. 소송 등의 부서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소송수수료) ①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 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소송비용 등에 관한 적용)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승소사례금은 진행 중인 심급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u>2명</u> 이내의 공주시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p> <p>② ~ ⑥ (생략)</p> <p>제4조(직무) 고문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u>사항을 처리한다.</u></p> <p>1. ~ 5. (생략)</p> <p><u>&lt;신 설&gt;</u></p>	<p>제2조(위촉 및 위촉 해제) ① --- ----- ----- <u>5명</u> ----- -----.</p> <p>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4조(직무) ----- ----- <u>직무를 수행한다.</u></p> <p>1.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소송심의위원회) ① <u>중요</u> <u>소송의 지정 및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u> <u>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u> <u>라 한다)를 둔다.</u></p> <p>②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p> <p>1. <u>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u></p> <p>2. <u>중요소송 등의 지정에 관한 사항</u></p> <p>3. <u>그 밖에 소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u></p> <p>③ <u>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u></p>

제5조 (생략)

<신설>

제6조 (생략)

제7조 (생략)

이기 위해서 공주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6조(소송수수료) ①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하되,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을 지급한다. 다만, 소송진행중 청구취지가 확장된 경우에는 확장된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② 소송대리 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승소사례금을, 그 밖의 소송비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의 각 지급기준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중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 (현행 제6조와 같음)

제9조 (현행 제7조와 같음)

【별 표】

## 소송비용 등 지급기준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지 급 기 준		
소송별	내 용	착 수 금	승 소 사 례 금
민사소송	1. 신청사건 • 변론이 없는 경우 • 변론이 있는 경우	22만원 44만원	없 음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 기준) • 2,000만원 미만 •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억원 이상 • 중요 사건	110만원 165만원 220만원 330만원 550만원	100분의 60이상 승소확정의 경우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화해, 조정, 인낙, 청구포기, 소취하(쌍방취하포함)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변론 없는 소취하와 조건부 소취하는 제외)
	3. 상고심·환송심	본안사건 착수금의 1/2이내	상동
행정소송	1. 신청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없 음
	2. 본안사건	민사소송에 준함	민사소송에 준함
	3. 상고심·환송심	민사소송에 준함	상동
기 타	1. 인지대 2. 송달료 3. 검증비 4. 증인신청비 5. 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실 액	

## 공주시 공고 제2015 - 1659호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을 위해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운영되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제정(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의 명칭 및 내용이 변경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함
- 나.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설하여 지역사회 내 복지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
- 다. 각 협의체에서 수행하는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명칭, 관련법령 등의 변경 (안 제1조)
  -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지역사회복지계획 ⇒ 지역사회보장계획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등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 (안 제2조)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구성 인원 확대 (안 제5조, 제7조)
  - 15명 이상 25명 이하 ⇒ 15명 이상 40명 이하
- 라.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항 신설 (안 제9조)
  -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으로 구성, 임기 2년(연임 가능)
- 마. 읍·면·동 복지위원 운영 조항 정비 (안 제10조)
  - 지역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 구성, 임기 3년(연임 가능)
- 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공동위원장 연임 규정 신설 (안 제13조)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사.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안 23조)
  - 각 협의체의 지역사회보장 관련 역량강화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아. 부칙
  - 조례개정에 따른 시행일, 경과조치, 다른 조례의 개정 등 (안 부칙 제1조부터 제4조)

### 3. 입법예고 기간 : 2015. 12. 1. ~ 2015. 12. 21. (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12. 21.(월) 까지 공주시장(사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사회과

- 주 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2552
- 전화번호 : 041-840-8220 FAX : 041-840-2309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제44조에 따라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분과위원회”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내에 사회보장과 관련된 심의 기능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3.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5.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란 읍·면·동 단위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적 배려계층 주민 발굴·자원 연계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말한다.
6.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이 필요하여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8. 「의료급여법」 제6조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공주시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주시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10.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11. 읍·면·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시장이 지역보장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3.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에 필요한 건의사항

**제4조(협의체 기구)**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분과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협의체를 두며, 필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5조(대표협의체)**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민국장·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에 제3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지원, 자활협의체, 생활보장, 의료급여, 사회복지기금 등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대표협의체 위원 중 5명 이상 15명 이내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과장·복지지원과장·보건과장·건강과장, 실무분과장,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 중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임명 또는 선출한다.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8조(실무분과)** ① 실무분과에 서비스연계, 자활고용, 경로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정책,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등의 분과를 둘 수 있다.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간사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선출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9조(읍·면·동 협의체)** ①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모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읍·면·동 협의체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운영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6. 주민자치위원, 이·통장,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7.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 ⑥ 읍·면·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하며,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둘 수 있다.
- ⑦ 읍·면·동 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참여할 수 있다.
-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⑨ 시장은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⑩ 읍·면·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면·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0조(복지위원)** ① 시장은 읍·면·동의 사회복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을 복지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 ② 복지위원의 정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읍·면·동별로 2명 이상 4명 이내로 한다.
  - ③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지역의 사회복지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복지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복지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지역내 사회복지급여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그 밖에 관할지역 주민의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⑤ 복지위원의 활동결과는 반기별 1회 이상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시장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주민의 사회복지욕구 수렴 및 보장시책 홍보 등을 위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⑦ 복지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9조제8항에 따른다.
  - ⑧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7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 명단을 공주시보와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체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위원장, 읍·면·동 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간사)**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는 사회과장,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담당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다만, 실무분과의 간사는 실무분과와 관련된 실무담당업무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6조(사무국)**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
- 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④ 사무국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회의 등)** 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 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
  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
  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
  4. 읍·면·동 협의체 :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사항의 처리)** 시장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22조(회의 수당)** 각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사업 및 운영지원)**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각 협의체의 역량강화 및 마인드 함양 등 지역사회보장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는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3에 따라 수립 시행중인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각 협의체 및 복지위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공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를 준용하여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하여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후단부의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② 공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③ 공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공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공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한다.

공주시공고 제 2015-1666 호

「공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 공 주 시 장

### 공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의 개정에 따라 회계관직 상향지정 등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회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회계관직 “총괄부채관리관” 상향지정(안 제3조)
  -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 → 부시장
- 예산이월 확정일자 및 장부마감 기한 조정(안 제27조, 안 제34조)
  - 이월요구서 제출일(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 → 끝나는 날까지),
  - 이월예산 확정일(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 10일이내)
  - 이월장부정리 마감일(4월 1일 → 2월 10일)
- 서식 정비(안 제41조)
  - 가상계좌를 통한 지출금 반납 고지서(별지 제31-1호) 신설

3. 입법예고기간 : 2015. 12. 1. ~ 2015. 12. 21.(20일간)

####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년 12월 21일까지 공주시장(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의견제출 사항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나. 의견제출할 곳 : 공주시청 회계과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공주시청) 우편번호 314-702
- 전화번호 : 041-840-8252 FAX : 041-840-2317

##### 다.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이 개정안은 공주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 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주시 규칙 제 호

## 공주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재무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

제27조제1항 중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를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30일이내” 를 “10일이내”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4월 1일” 을 “2월 10일” 로 한다.

제41조제1항 중 “발급하여야” 를 “발부하여야” 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제41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31-1호, 별지 제62호, 별지 제81호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적용례) 제27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이월예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공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채권·채무관리관”을 “채권부채관리관”으로, 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공주시 농촌진흥자금 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제4항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제7항 중 “총괄채무관리관”을 “총괄부채관리관”으로, 제8항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p> <p>1. 본청</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생략)</p> <p style="padding-left: 20px;">사. <u>총괄부채관리관: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u></p> <p style="padding-left: 20px;">아. ~ 하. (생략)</p> <p>2. ~ 5. (생략)</p> <p>② ~ ⑤ (생략)</p> <p>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담당관·과장,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u>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u> 이월요구서(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 서식)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예산업무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법 제50조</p>	<p>제3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p> <p>-----</p> <p>-----</p> <p>-----</p> <p>-----</p> <p>-----</p> <p>1. -----</p> <p style="padding-left: 20px;">가. ~ 바. (현행과 같음)</p> <p style="padding-left: 20px;">사. <u>총괄부채관리관: 부시장</u></p> <p style="padding-left: 20px;">아. ~ 하. (현행과 같음)</p> <p>2. ~ 5. (현행과 같음)</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p> <p>-----</p> <p>-----</p> <p>-----</p> <p>-----<u>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u> -----</p> <p>-----</p> <p>-----</p> <p>-----</p> <p>② -----</p> <p>-----</p> <p>-----</p>

제4항에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담당관·과장, 재무관 및 지출원, 세정업무담당부서의 장과 시의회사무국장 및 제1관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생략)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월 1일까지로 한다.

③ (생략)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지출원은 과오지급과 일상경비 및 개산금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 또는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31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② (생략)

③ 지출원은 제1항에 의한 과오지급에 대한 반납고지서 발부 시 계좌이체를 통하여 반납 받을 수 있도록 가상계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생략)

-----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이내에-----  
-----  
-----  
-----  
-----.

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현행과 같음)  
② -----  
----- 2월 10일까지-----  
--.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① -----  
-----  
-----  
-----  
-----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1호 서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③(현행 제4항과 같음)

# □ 서식

< 별지 제31-1호서식 >

## 반납 고지서

고 지 서

영수필통지서

영수증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반납하시기 바랍	
납입기한 년 월 일	
년 월 일	
지출원 성명 ㉠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세출금에 반납하였기 통지함.	
년 월 일	
금고 ㉠	
(반납자) 성명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지출원	귀하

년도	회계
고지번호	20xx-xxxxxx-xxxxxx
(조직)	
(정책)	(단위)
(세 부)	(통계목)
(편성목)	
금	원(금 원)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금고 ㉠	
지출금 반납 입금계좌	
xx은행	xxxx-xx-xxxxxx
(반납자)	귀하

<작성요령> 주서로 기재

<신설 15915>

<별지 제62호 서식> <개정 15.9.15>

### 자 금 운 용 기 록 부

연월일	적요	기관명	지				불				환				잔액	비고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1)	정기 예금	MMDA	기타 예금	차입 또는 대여	계 (2)				

<기재요령> 비교란에는 환입여부를 표시



##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2번지 일원에 『사곡계실지구 성장관리방안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56조의3 규정에 의거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5. 12. 01.

### 공 주 시 장

1. 공람 기간 : 2015. 12. 01. ~ 12. 15. (15일간)
2. 공람 장소 : 전략사업과 도시재생팀 (041-840-8687)  
사곡면사무소 (041-840-2874)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기한 : 2015. 12. 15. 18:00
  - 제출처 : 공람장소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이용
4. 공람내용
  - 가.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2번지 일원(A=160,886㎡)
    - 나. 성장관리방안 : (첨부1) 참조
  - 나.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결정(변경)(안)
    - 가. 공간적 범위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2번지 일원(도로 8개노선, 주차장 1개소)
    - 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 (첨부2) 참조

## 5. 기타

- 가. 본 성장관리방안 수립(안) 및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안)은 행정 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며 본 결정(변경)(안)이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나. 향후 행정절차(공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이행 중 본 공람·공고 내용과 다르게 결정될 수 있으며, 공람장소에서 필사 및 사진촬영은 금지합니다.
- 다. 관련도면은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략사업과 도시재생팀 (041-840-868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1. 성장관리방안(안)

### 1. 성장관리방안의 목적

- 사곡면 계실리 일원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른 미래 발전방향을 예측하고, 개발 계획 및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 계획적이며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함

### 2.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계실리 361-2번지 일원
- 면적 : 160,886㎡

### 3. 토지이용계획(안)

구 분		면적(㎡)	구성비(%)	비고	
총계		160,886	100.0		
주거 용지	합계	115,319	71.7		
	주거용지	115,319	71.7		
기반 시설	합계	45,567	28.3		
	광장	1,409	0.9		
	원형녹지	16,359	10.2		
	주차장	1,853	1.2		
	하천	6,567	4.1	하천변도로 2,322㎡포함	
	도로	소계	19,379	12.0	
		공공시행	14,045	8.7	
		민간권장	5,334	3.3	

## 첨부2. 도시관리계획(도로,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1. 교통시설

#### 가. 도로

##### 1)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8	1,468	8,662	-	-	-	2	317	2,656	6	1,151	6,006
광로	-	-	-	-	-	-	-	-	-	-	-	-
대로	-	-	-	-	-	-	-	-	-	-	-	-
중로	-	-	-	-	-	-	-	-	-	-	-	-
소로	8	1,468	8,662	-	-	-	2	317	2,656	6	1,151	6,006

#####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신설	소로	2	가	8	국지 도로	242	소로3-C	소로1-1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나	8	국지 도로	75	소로1-12	계실리 135-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A	6	국지 도로	66	소로3-C	소로2-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B	6	국지 도로	174	소로3-C	소로2-가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C	4	국지 도로	242	계실리 133-1	소로1-1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D	4	국지 도로	268	계실리 146-1	소로1-12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E	6	국지 도로	62	소로3-F	소로3-D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F	6	국지 도로	339	소로1-12	소로2-나	일반 도로			

##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2-가	◦ 노선신설 - B=8m, L=242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2-나	◦ 노선신설 - B=8m, L=75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3-A	◦ 노선신설 - B=6m, L=66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3-B	◦ 노선신설 - B=6m, L=174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3-C	◦ 노선신설 - B=4m, L=242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3-D	◦ 노선신설 - B=4m, L=268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3-E	◦ 노선신설 - B=6m, L=62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3-F	◦ 노선신설 - B=6m, L=339m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선신설

## 나. 주차장

### 1)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	-	증) 642	642	-	
신설	A	주차장	사곡면 계실리 357-1일원	-	증) 642	642	-	

## ■ 주차장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주차장	◦ 신설 - 면적 : 642㎡	◦ 소방방재 교육연구단지 조성에 따라 결정된 성장관리지역 내 부족한 주차시설 확보를 위해 주차장 신설





공주시 공고 제2015-1672호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근무의욕 고취 및 수준 높은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적용범위(안 제3조)
-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5조~안 제7조)
- 후생복지 심의위원회 설치, 기능(안 제8조~안 제9조)
-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안 제10조)

-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1조)
-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안 제12조)

###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2015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인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우) 32552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공주시청 인사담당관실(전화 : 041-840-2074, FAX : 041-840-2307)

### 4. 참고사항

- 이 조례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붙임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 공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공주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주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공주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주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공무원
2. 시보 임용 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
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직원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휴게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콘도)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우수·모범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문화시찰 지원

2. 직장 단합 체육대회 및 한마음 행사 지원
3.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
4. 직원 근무복 지급
5.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주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민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후생복지 업무 부서장, 예산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공주시의회 추천 시의원, 공무원 후생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등

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개최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업무 팀장

이 된다.

- ⑦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공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후생복지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 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 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 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법 제77조제 3항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그 지급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 후생복지시설 운영, 후생복지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공주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등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분담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관리 역량강화 및 책임행정을 구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2조)
- 어린이놀이기구 유지관리·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어린이놀이기구 행위제한 및 안전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제5조)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감시망 구축 및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제8조)
- 조례 관련 예산지원 및 표창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0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615, FAX : 041) 840-233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시장이 관리·감독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써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수립)** ① 시장은 관리주체인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 정기검사, 안전진단)에 관한 사항
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대책
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
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
9.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
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
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 점검을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 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안전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관리주체는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별표 항목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시장은 신속한 안전조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담당업무 부서장은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 업무부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유지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관리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및 방법(제5조 관련)

점검 결과 : 양호 ◎, 요주의 ○, 요수리 △, 이용금지 ×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 시설 공동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모래장 및 시설물 보건위생 점검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배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 'S' 훅)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배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 면의 존재 ○ 볼트나 나사가 풀림 상태

구 분	점 검 항 목
미끄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 착지판의 흠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깔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 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시소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 풀림
철봉	○ 파이프가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 풀림

구 분	점 검 항 목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기어 오르기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영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 리기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양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깔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 점 검 방 법

1.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항목의 점검주기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표시한다.

가. 양 호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危害)·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없는 경우

나. 요 주 의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는 발견할 수 없으나, 어린이놀이기구와 그 부분품의 제조업체가 정한 사용연한이 지난 경우

다. 요 수 리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요소가 되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생길 가능성이 있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더럽거나 안전 관련 표시가 훼손된 경우

라. 이용금지 :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에게 위해·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틈, 헐거움, 날카로움 등이 있거나 위해가 발생한 경우

2.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안전점검결과 요수리 및 이용금지에 해당하는 시설 및 부분품에 대하여는 이용자의 위해·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이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기준 마련으로 교육 훈련등 관련사업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사고 발생을 최소화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등의 예산 지원(안 제 2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 안전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 의견 보내실 곳 : 공주시청 안전관리과(안전정책팀)  
- 주소 : 공주시 봉황로 1(봉황동) / 우편번호 : 32552  
- 전화 : 041) 840-8615, FAX : 041) 840-233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 제목** “(안전관리요원 운영비)” 를 “(안전관리요원 등의 지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시장은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명구조 관련 교육·훈련 사업
2.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 사업
3.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
4. 그 밖에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제24조(안전관리요원 운영비) 시</u> <u>장은 제8조에 따른 안전관리요</u> <u>원 운영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u> <u>다.</u></p> <p><u>&lt;신 설&gt;</u></p>	<p><u>제24조(안전관리요원 등의 지원)</u></p> <p><u>①시장은 안전관리요원 운영 등</u> <u>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u> <u>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인명구조 관련 교육·훈련</u> <u>사업</u></li> <li><u>2. 안전사고 예방 및 수습을 위</u> <u>한 장비 또는 물자 등의 지원</u> <u>사업</u></li> <li><u>3.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활동을</u> <u>수행하는 민간단체의 운영비</u></li> <li><u>4. 그 밖에 물놀이 인명사고 예</u> <u>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u> <u>고 판단되는 사업.</u></li> </ol> <p><u>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신청·교</u> <u>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u> <u>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u> <u>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u></p>

## 2015년 공개재분류 결과 비공개 기록물 유형별 현황 공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4항에 의거하여 2015년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 공 주 시 장

#### <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비공개로 재분류된 총 건수	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 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 불이익 (제8호)
15,373	37	170	3	0	39	15,063	58	3

\* '비공개 유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것임

공주시 공고 제 2015-1685호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공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2월 1일

공 주 시 장 인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민선6기 1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조직의 체질개선 필요성에 따라 조직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이 되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해 직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5년 전직시험 합격자에 대한 정원을 조정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주요 개편 내용》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기구(과) 변동 없이 팀 개편 조직 정비】

구 분	본 청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 사무국
	국단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변경 전	3	25(113)	2소6과(24)	3(10)	1(4)	9(27)	6	1(2)
변경 후	3	25(110)	2소6과(24)	3(11)	1(4)	9(27)	6	1(2)

※ ( )는 팀 수

① 팀 통·폐합(기준미달 소규모 및 유사 중첩업무 팀) 【△8】

현 행(통합 前)		개 편(통합 後)	
기획담당관(의회법무)	+	기획담당관(규제개혁)	기획담당관(의회법무규제)
시정담당관(시민소통)	+	시정담당관(새마을)	시정담당관(시민소통새마을)
미디어담당관(지역마케팅)	+	농정과(유통산업)	농정과(농산유통T/F)
시민봉사과(통합민원)	+	시민봉사과(컨택센터)	시민봉사과(통합민원)
세무과(세정)	+	세무과(도세)	세무과(도세)
건설과(지역개발)	+	건설과(생활민원)	건설과(생활민원)
환경자원과(자원순환)	+	환경자원과(환경시설)	환경자원과(자원순환시설)
시정발전연구과(정책개발)	+	시정발전연구과(지역협력)	시정발전연구과(정책개발)

② 팀 신설 【6】

신설 팀	추진 업무
기획담당관(경영관리)	주요업무(사업, 행사 등)에 대한 평가·통제·조정, 공모사업 관리 총괄, 각종평가, 통계업무
시정담당관(교류협력)	국내·외 교류 업무 등
산림과(산림휴양)	주미산 자연 휴양림, 목재체험장, 자생식물원 관리 등
교통과(자전거문화)	유무선자전거대여센터 및 자전거도로 관리 등
시정발전연구과(시정연구)	시정발전연구단 운영, 당면 현안사항 연구 보고
문화시설사업소(고마)	고마시설 관리 및 운영

③ 팀 명칭 변경

개편 前	개편 後	비 고
복지지원과(노인)	복지지원과(노인복지)	복지기능 강조
복지지원과(장애인)	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	복지기능 강조

개편 前	개편 後	비 고
문화관광과(테마관광)	문화관광과(관광사업T/F)	관광사업단 업무
문화재과(사적운영)	문화재과(세계유산)	세계유산 기획, 관리 총괄
교육체육과(시민교육)	교육체육과(평생교육)	평생교육도시 지향
건설과(농촌개발)	건설과(농업기반)	농업기반시설 업무
토지과(새주소)	토지과(지적재조사)	신규업무 중점
시정발전연구과(도농교류)	시정발전연구과(농촌관광)	행정변화 대응
전략사업과(도자문화시설)	전략사업과(도자문화육성)	행정변화 대응
보건과(방역)	보건과(감염병관리)	행정변화 대응
건강과(가족보건)	건강과(정신건강)	행정변화 대응
문화시설사업소(공연)	문화시설사업소(문예회관)	공연 및 문예회관 관리

#### ④ 팀 부서이관 조정

조정 팀	개편 前 부서		개편 後 부서	비 고
공 보	시정담당관	⇒	미디어담당관	홍보기능 통합
귀농귀촌	농촌진흥과	⇒	시정발전연구과	인구 유입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 대책개발 및 전원주택 단지 조성 등 전략적 추진
밤 연구	시정발전연구과	⇒	농촌진흥과 (공주밤연구소)	공주밤연구소 설립위치 및 기능을 고려 재편

#### 【중 정원 변동 없이 부서 간 인력정비를 통해 전략사업 추진인력 반영】

- ① 세계유산 전담 추진인력 반영(학예연구사) : 1명
- ② 전략사업(관광사업, 평생학습도시, 농산유통, 한우브랜드 추진인력)  
(임기제) 반영 : 4명

#### 【개방형직위 지정 운영】

-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보건소장을 개방형직위로 지정

####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2015년 전직시험 최종합격자 정원 조정】

- 관리운영직군(기계운영7 1명) → 일반직(공업7 1명)

가. 정원조정

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직급별 정원 조정(안 제49조제1항 별표 3) : 998명(총 정원 변동없음)

○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조정(안 제49조제1항 별표 3)

구 분	계	정무직	일반직(관리운영·전담직위포함)					연구직			지도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이하	소계	연구사	연구관	소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998	1	959	1	5	52	901	6	6	-	30	3	27
개 정	998	1	958	1	5	52	900	7	7	-	30	3	27
증 감	-	-	△1	-	-	-	△1	1	1	-	-	-	-

○ 일반직 총 정원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현 행	959	1	5	52	248	283	224	146
개 정	958	1	5	52	248	284	225	143
증 감	△1	-	-	-	-	1	1	△3

○ 연구직 및 지도직 정원

구 분	연구직			지도직		
	소계	연구관	연구사	소계	지도관	지도사
현 행	6	-	6	30	3	27
개 정	7	-	7	30	3	27
증 감	1	-	1	-	-	-

※ 그 밖의 직렬·직급(정무직, 별정직)은 변동사항 없음.

○ 정원관리 기관별 총 정원

구 분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현 행	998	550	17	156	50	225
개 정	998	544	17	160	52	225
증 감	-	△6	-	4	2	-

○ 정원관리 기관별 · 부서별 정원 조정 세부 내역

기 관 별	부 서	기존	변경	증감인원	비 고
본 청 (증5/감11)	기담 당 획관	21	22	1	경영관리팀 업무추진 인력 증원 1명
	시담 당 정관	22	18	△4	공보팀 이관(미디어담당관)
	미담 당 어관	15	17	2	공보팀 인수 4명(시정담당관), 고맏나루장터 이관 2명(농정과)
	복지지원과	23	24	1	경로당 시설 관리 업무 인수 1명 (건설과)
	세 무 과	30	29	△1	세정+도세 팀 통합으로 인한 정원 감원 1명
	문 화 관 광 과	25	22	△3	고마시설 관리 이관(문화시설사업소)
	문 화 재 과	21	21	-	학예사 1명 증원(자연감소 위생9 감원)
	교 육 체 육 과	14	15	1	평생교육 전담인력(임기제) 1명 증원
	건 설 과	25	23	△2	지역개발+생활민원 팀 통합, 경로당 업무 복지지원과 이관 정원 감원 2명
	교 통 과	22	22	-	자연감소 직렬·직급 조정 (교통과 전기운영7⇄ 복지시설사업소 위생8) (위생8 → 행정·시설9)
	환 경 자 원 과	48	47	△1	자원순환+환경시설 팀 통합에 따른 자연감소 직렬 감원(전기운영7)
직속기관 (증4)	농 정 과	22	24	2	고맏나루장터 인수 2명(미디어담당관)
	농 촌 진 흥 과	15	17	2	공주밤연구소 인수 3명(시정발전연구과), 농업회관 관리인력 인수 1명(문화시설사업소), 귀농귀촌 이관 2명(시정발전연구과)
사업소 (증2)	문 화 시 설 사 업 소	23	25	2	고마시설 관리 인수 3명(문화관광과), 농업회관 관리인력 이관 1명(농촌 진흥과), 전직시험 합격자 정원조정 1명(기계운영7 → 공업7)

②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 조정(안 제49조제2항 별표 4)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무분야
현 행	11	6	2	2	1	-	
감 원	△3	△1	△1	△1	-	-	시정홍보 1(행정7) 속기사 1(속기9) 유통지원 1(행정· 농업7)
중 원	4	2	-	2	-	-	관광사업 1(행정6) 농산유통지원 1 (행정·농업 6) 한우브랜드육성1 (행정·농업6) 평생교육사 1(행정7)
개 정	12	7	1	3	1	-	

③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신설(안 제49조제2항 별표 5)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대상직위
총 계	1			1			
4급 소계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보건소장

나. 팀 재편에 따른 부서 간 사무조정 내역 : 붙임 개정안과 같음.

다. 그 밖의 사항

- 업무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직급 및 직렬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주시장(참조: 인사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그 사유),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공주시 인사담당관실(인사팀)

주소: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우편번호: 32552 / 전화: 041-840-2070 / FAX: 041-840-2307

#### 4. 참고사항

이 개정안은 우리시 홈페이지([www.gongju.go.kr](http://www.gongju.go.kr)) 고시·공고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제14호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2. 주요업무(사업, 행사 등)에 대한 평가·통제·조정

제5조제2항제23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를 제23호로 하며, 같은 항 제19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제19호로 하며, 같은 항 제15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를 제15호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공모사업 관리 총괄

제5조제2항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2호를 제24호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를 제22호로 한다.

제5조제2항에 제20호 및 제2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0. 각종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

26. 그 밖에 기획조정, 예산, 경영관리, 의회·법무·규제,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제2항제20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25호를 제20호로 하며, 같은 항 제30호를 제25호로 하고, 같은 항 제35호를 제30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6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1호를 제26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7호를 제22호로 하고, 같은 항 제32호를 제27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8호를 제2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3호를 제28호로 한다.

제6조제2항제29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그 밖에 시정, 시민소통·새마을, 교류협력, 의전과 관련된 사항  
제6조제2항제34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2항제12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13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시 역사에 관한 기록 유지(행정 자료실)에 관한 사항  
제8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보, 시정지, 인터넷 신문 발간

5. 기록사진 촬영·기록보존 및 시정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6.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에 보도된 시정기록 수집 관리

7.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해명 등에 관한 사항 총괄

제8조제2항제2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부터 제23호까지를 각각 제9호  
부터 제2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 및 제2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5. 그 밖에 미디어 홍보정책, 공보, 정보화, 통신에 관한 사항

제12조제5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경로당 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제11호 중 “임기제일반직공무원” 을 “임기제공무원”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9호 및 제3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0호를 제29호로 하고, 같은 조 제31호를 제30호로 하며, 같은 조 제33호를 제31호로 한다.

제16조제34호를 제32호로 한다.

제22조제9호 중 “정주권, 전원마을” 을 “정주권”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3.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설·관리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촌혁신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공주 밤 연구 등” 을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혁신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등 시정” 으로, “시정발전연구과장” 을 “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정책개발·연구,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 을 “정책개발, 시정연구, 농촌관광, 농촌혁신, 귀농귀촌”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26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2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8호부터 제3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0. 당면 현안사항 연구 보고

#### 28.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 29. 전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정책개발, 시정연구, 농촌관광, 농촌혁신,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제31조제3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  
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35조제23호를 제2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3. 공주의 대표 먹거리 개발 및 먹거리촌 육성

제38조제2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농  
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지방농업사무관으로 기술  
보급과장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수의사무관·농촌지  
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로 한다.

제39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9. 온라인(고맛나루)장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제39조제30호부터 제36호까지를 각각 제31호부터 제3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0. 온라인(고맛나루)장터 판매·홍보, 입점자 및 제품관리, 유통관리, 고객 관리에 관한 사항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조성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을 높이는데”를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특산물인 공주 밤의 다양한 활  
용법을 연구 개발하여 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17. 공주 밤 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제41조제1항제18호를 제2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를 각  
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8. 공주 밤 연구위원회 구성 및 지원

19. 공주 밤 산·학·연 협력단 운영

20. 공주 밤 가공, 유통 기술 지원

제44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고마시설 관리 운영(다만, 기본 운영방안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립 후 인수한다.)

제49조제2항 중 “지방임기제일반직공무원” 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5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으로 한다.

별표 3부터 별표 5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개편 관련 인사 발령부터 적용한다.

[별표 4]

##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2항 관련)

(단위: 명)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직무분야
총 계	12	7	1	3	1		
일반직 소계	12	7	1	3	1		
5급 소계	2	1		1			
지방행정사무관	1	1					기업유치1
지방의무사무관	1			1			의료분야 1
6급 소계	4	2		2			
지방행정주사	2	2					시정홍보 1 관광사업 1
지방행정·농업주사	2			2			농산유통지원 1 현우브랜드육성 1
7급 소계	4	3			1		
지방행정주사보	3	2			1		평생교육사 1 축제 1 공연기획 1
지방행정시설주사보	1	1					공공디자인 1
8급 소계	1	1					
지방행정서기	1	1					외국어 통역 1
9급 소계	1		1				
지방속기서기보	1		1				속기사 1

[별표 5]

##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정원표(제49조제2항 관련)

(단위: 명)

직급별 \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대상직위
총 계	1			1			
4급 소계	1			1			
지방기술서기관	1			1			보건소장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기획담당관) ① (생 략)</p> <p>② 기획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 미래비전 설정과 시정 종합 기획,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과 자율성 보장 등에 있고,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p> <p>1. ~ 11. (생 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12. (생 략)</p> <p>13. (생 략)</p> <p>14. ~ 16. (생 략)</p> <p>17. (생 략)</p> <p>18. <u>각종 통계 및 자료관 운영에 관한 사항</u></p> <p><u>&lt;신 설&gt;</u></p> <p>19. (생 략)</p> <p>20. (생 략)</p> <p>21. · 22. (생 략)</p> <p>23. (생 략)</p>	<p>제5조(기획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p> <p>-----</p> <p>-----</p> <p>-----</p> <p>-----</p> <p>-----</p> <p>-----</p> <p>1. ~ 11. (현행과 같음)</p> <p>12. <u>주요업무(사업, 행사 등)에 대한 평가·통제·조정</u></p> <p>13. <u>공모사업 관리 총괄</u></p> <p>14. (현행 제12호와 같음)</p> <p>15. (현행 제13호와 같음)</p> <p>16. ~ 18. (현행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와 같음)</p> <p>19. (현행 제17호와 같음)</p> <p><u>&lt;삭 제&gt;</u></p> <p>20. <u>각종 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u></p> <p>21. (현행 제19호와 같음)</p> <p>22. (현행 제20호와 같음)</p> <p>23. · 24. (현행 제21호 및 제22호와 같음)</p> <p>25. (현행 제23호와 같음)</p>

24. 그 밖에 기획조정, 예산, 의회, 법무, 규제개혁,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시정담당관) ① (생략)

② 시정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시 행정의 종합 조정, 시민 여론을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지방 자치행정을 실현하는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 19. (생략)

20. 기록사진 촬영·기록보존 및 시정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1. 시보, 시정지, 인터넷신문 발간

22.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에 보도된 시정기록 수집 관리

23.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해명 등에 관한 사항 총괄

24.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25. (생략)

<삭 제>

26. 그 밖에 기획조정, 예산, 경영관리, 의회·법무·규제, 서울사무소 업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정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19.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20. (현행 제25호와 같음)

26. (생략)

27. (생략)

28. (생략)

29. (생략)

30. (생략)

31. ~ 33. (생략)

34. 그 밖에 시정, 시민소통, 홍보, 새마을, 의전과 관련된 사항

<신설>

35. (생략)

제7조(인사담당관) ① (생략)

② 인사담당관의 설치목적은 시의 조직과 인력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며, 후생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조직의 발전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있으며, 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서장을 보좌한다.

1. ~ 11. (생략)

<신설>

12. (생략)

13. ~ 24. (생략)

21. (현행 제26호와 같음)

22. (현행 제27호와 같음)

23. (현행 제28호와 같음)

24. (현행 제29호와 같음)

25. (현행 제30호와 같음)

26. ~ 28. (현행 제31호부터 제33호까지와 같음)

<삭제>

29. 그 밖에 시정, 시민소통·새마을, 교류협력, 의전과 관련된 사항

30. (현행 제35호와 같음)

제7조(인사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12. 시 역사에 관한 기록 유지(행정자료실)에 관한 사항

13. (현행 제12호와 같음)

14. ~ 25. (현행 제13호부터 제24

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생략)

② 미디어담당관의 설치 목적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온라인 홍보 매체를 통해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 홍보와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정보화 기반 구축 및 지역 정보화 지원을 통해 지식정보 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으며, 미디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시장을 보좌한다.

1. ~ 3. (생략)
4. 시정지, 인터넷 신문 발간 지원
5. 지역마케팅 총괄
6. 온라인(고맏나루)장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7. 온라인(고맏나루)장터 판매, 홍보, 유통, 고객관리, 정산, 회계 관리, 시스템 운영관련 입점업체 교육

<신설>

8. (생략)

호까지와 같음)

제8조(미디어담당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시보, 시정지, 인터넷 신문 발간
5. 기록사진 촬영·기록보존 및 시정 홍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6. 보도자료 제공 및 언론매체에 보도된 시정기록 수집 관리
7. 잘못된 언론보도에 대한 대응 및 해명 등에 관한 사항 총괄
8.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9. (현행 제8호와 같음)



지원하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10. (생략)
- 11. 임기제일반직공무원, 관광안내통역원, 문화관광해설사 관리
- 12. ~ 28. (생략)

29. 고마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0.·31. (생략)

32. 공주의 대표 먹거리 개발 및 먹거리촌 육성

33. (생략)

34. (생략)

제22조(건설과) 건설과의 설치 목적은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망 확충 및 유지·관리와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정주기반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건설행정 구현에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 8. (생략)
- 9. 농촌 환경 정비사업(정주권, 전원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
- 10. ~ 22. (생략)

-----  
-----.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임기제공무원-----  
-----
- 12. ~ 28. (현행과 같음)

<삭제>

29.·30. (현행 제30호 및 제31호와 같음)

<삭제>

31. (현행 제33호와 같음)

32. (현행 제34호와 같음)

제22조(건설과)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 9. -----정주권-----  
-----
- 10. ~ 22. (현행과 같음)

23. 마을회관(경로당) 신설·관리

24. ~ 29. (생략)

제31조(시정발전연구과) 시정발전연구과의 설치 목적은 주변 지역 간 상생발전, 농촌혁신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공주 밤 연구 등 주요 전략 정책을 개발하여 공주시 미래 신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으며, 시정발전연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책개발 · 연구,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에 관한 종합 기획 · 조정

2. ~ 9. (생략)

<신 설>

10. (생략)

11. ~ 26. (생략)

27. 공주 밤 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28. 공주 밤 연구위원회 구성 및 지원

29. 공주 밤 산 · 학 · 연 협력 단 운영

30. 공주 밤 가공, 유통 기술 지원

23. 마을회관(경로당 제외) 신설·관리

24. ~ 29. (현행과 같음)

제31조(시정발전연구과) -----

-----  
---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 농촌혁신을 통한 도농 균형 발전 등 시정 -----

----- 과장 -----

1. 정책개발, 시정연구, 농촌관광, 농촌혁신, 귀농귀촌-----

2. ~ 9. (현행과 같음)

10. 당면 현안사항 연구 보고

11. (현행 제10호와 같음)

12. ~ 27. (현행 제11호부터 제26호까지와 같음)

<삭 제>

28.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29. 전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0. 그 밖에 정책개발, 시정연구,

31. 그 밖에 정책개발, 지역협력, 도농교류, 농촌혁신, 밤 연구에 관한 사항

제33조(소장 및 지소장) ① (생략)

<신설>

② (생략)

제35조(보건과) 보건과의 설치 목적은 보건행정을 합리적으로 조직·운영하고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2. (생략)

<신설>

23. (생략)

제38조(하부조직) ① (생략)

② 농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농업사무관·지방농촌지도관

농촌관광, 농촌혁신, 귀농귀촌에 관한 사항

<삭제>

제33조(소장 및 지소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5조(보건과) -----  
-----  
-----  
-----  
-----  
-----

1. ~ 22. (현행과 같음)

23. 공주의 대표 먹거리 개발 및 먹거리촌 육성

24. (현행 제23호와 같음)

제38조(하부조직) ① (현행과 같음)

② -----  
-----

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사무관 · 지방수의사무  
관 · 농촌지도관으로, 농촌진흥  
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 · 지방농  
업사무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  
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39조(농정과) 농정과의 설치 목적  
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  
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  
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8. (생 략)

29. 온라인(고맛나루)장터 농산물  
입점자 선정 및 상품관리, 상품  
관련 입점업체 교육에 관한 사항  
<신 설>

30. (생 략)

31. ~ 36. (생 략)

제41조(농촌진흥과) ① 농촌진흥과  
의 설치 목적은 농업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  
하여 살기 좋은 농촌 환경조성과,

----- 지방행정사무관 · 지방농업  
사무관 · 지방수의사무관 · 농촌지  
도관으로, 농촌진흥과장 · 기술보  
급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 -----  
-----  
-----.

제39조(농정과) -----  
-----  
-----  
-----  
-----  
-----  
-----.

1. ~ 28. (현행과 같음)

29. 온라인(고맛나루)장터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30. 온라인(고맛나루)장터 판매 ·  
홍보, 입점자 및 제품관리, 유통  
관리, 고객관리에 관한 사항

31. (현행 제30호와 같음)

32. ~ 37. (현행 제31호부터 제36  
호까지와 같음)

제41조(농촌진흥과) ① -----  
-----  
-----  
-----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대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략)

17. 귀농귀촌 지원정책 개발 및 추진 총괄

<신설>

<신설>

<신설>

18. (생략)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문화시설사업소의 설치 목적은 공공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하여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정서함양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체육활동 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으며, 소장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2. (생략)

<신설>

13. (생략)

제49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생략)

특산물인 공주 밤의 다양한 활용법을 연구 개발하여 밤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

1. ~ 16. (현행과 같음)

17. 공주 밤 연구소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18. 공주 밤 연구위원회 구성 및 지원

19. 공주 밤 산·학·연 협력단 운영

20. 공주 밤 가공, 유통 기술 지원

21. (현행 제18호와 같음)

제44조(문화시설사업소)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고마시설 관리 운영(다만, 기본 운영방안 등은 문화관광과에서 수립 후 인수한다.)

14. (현행 제13호와 같음)

제49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정원 중 별표 4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생략)

② -----  
----- 지방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5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  
-----.

③ (현행과 같음)

(별표3)

# 공주시 지방공무원 직렬별 정원표

(단위 : 명)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b>총 계</b>	<b>998(1)</b>	<b>544(1)</b>	<b>17</b>	<b>160</b>	<b>52</b>	<b>225</b>	<b>20</b>	<b>131</b>	<b>74</b>
<b>정무직 계</b>	<b>1</b>	<b>1</b>							
시장	1	1							
<b>일반직 계</b>	<b>958(1)</b>	<b>533(1)</b>	<b>17</b>	<b>131</b>	<b>52</b>	<b>225</b>	<b>20</b>	<b>131</b>	<b>74</b>
<b>3급 소계</b>	<b>1</b>	<b>1</b>							
지방부이사관	1	1							
<b>4급 소계</b>	<b>5</b>	<b>3</b>	<b>1</b>	<b>1</b>					
지방기술서기관	1			1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	4	3	1						
<b>5급 소계</b>	<b>52</b>	<b>26</b>	<b>2</b>	<b>5</b>	<b>3</b>	<b>16</b>	<b>1</b>	<b>9</b>	<b>6</b>
지방행정사무관	7	7							
지방의무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사무관	2	2							
지방행정·공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행정·녹지사무관	1	1							
지방행정·환경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사무관	16	12	2		2				
지방행정·사회복지·시설사무관	2					2			2
지방행정·사서·시설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사무관·농촌지도관	1			1					
지방행정·농업·녹지사무관	1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사무관	9					9	1	8	
지방행정·보건·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시설·방송통신사무관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사무관	3					3			3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시설사무관	1					1			1
지방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사무관	1			1					
지방행정·농업·수의사무관·농촌지도관	1			1					
<b>6급 소계</b>	<b>248</b>	<b>150</b>	<b>3</b>	<b>39</b>	<b>13</b>	<b>43</b>	<b>4</b>	<b>27</b>	<b>12</b>
지방행정주사	74	52	2		5	15	1	9	5
지방세무주사	2	2							
지방사회복지주사	5	5							
지방농업주사	2			2					
지방의료기술주사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복지주사	3	3							
지방시설주사	12	12							
지방보건진료주사	14			14					
지방환경주사	2	2							
지방행정·세무주사	6	5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	16	4			1	11	1	6	4
지방행정·전산주사	2	2							
지방행정·사서주사	2				2				
지방행정·공업주사	6	5			1				
지방행정·농업주사	12	3		4	1	4		2	2
지방행정·복지주사	4	4							
지방행정·보건주사	4	2		2					
지방행정·환경주사	4	4							
지방행정·시설주사	28	26	1		1				
지방행정·방송통신주사	1	1							
지방농업·수의주사	1			1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	1			1					
지방농업주사·농촌지도사	2			2					
지방보건·간호주사	4			4					
지방행정·세무·농업주사	4	2				2	1	1	
지방행정·사회복지·보건주사	4	1				3		3	
지방행정·전산·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공업·환경주사	2	2							
지방행정·공업·보건주사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	2	2							
지방행정·농업·복지주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주사	11	3			1	7	1	6	
지방행정·복지·시설주사	1	1							
지방행정·간호·보건주사	1			1					
지방행정·환경·시설주사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	1			1					
지방행정·시설주사·농촌지도사	1	1							
지방보건·간호·의료기술주사	4			4					
지방운전주사	2	2							
지방위생주사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	1			1					
지방전기운영주사	1	1							
<b>7급 소계</b>	<b>284</b>	<b>175</b>	<b>5</b>	<b>29</b>	<b>14</b>	<b>61</b>	<b>5</b>	<b>34</b>	<b>22</b>
지방행정주사보	71	51	3	1	3	13	2	3	8
지방세무주사보	7	7							
지방전산주사보	3	2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사회복지주사보	19	7				12		6	6
지방사서주사보	4				4				
지방공업주사보	7	5		1	1				
지방농업주사보	3			3					
지방녹지주사보	3	3							
지방수의주사보	1			1					
지방보건주사보	2			2					
지방보건진료주사보	1			1					
지방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주사보	3	3							
지방시설주사보	26	26							
지방방송통신주사보	3	2			1				
지방행정·전산주사보	6	6							
지방행정·세무주사보	13	4				9	1	5	3
지방행정·사회복지주사보	14	6				8	1	6	1
지방행정·사서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주사보	7	5			2				
지방행정·농업주사보	16	1		2		13		11	2
지방행정·녹지주사보	5	4				1		1	
지방행정·보건주사보	2	1		1					
지방행정·환경주사보	2	2							
지방행정·시설주사보	22	17	1			4	1	2	1
지방전산·방송통신주사보	1	1							
지방공업·환경주사보	3	3							
지방농업주사보·농촌지도사	2			2					
지방농업·수의주사보	3	1		2					
지방농업·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녹지·시설주사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주사보	1			1					
지방보건·간호주사보	3			3					
지방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환경·시설주사보	1	1							
지방행정·공업·시설주사보	3	3							
지방행정·시설·해양수산주사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간호주사보	3	2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주사보	1			1					
지방식품위생주사보	2			2					
지방운전주사보	5	5							
지방위생주사보	2	1				1			1
지방시설관리주사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전기운영주사보	2				2				
지방기계운영주사보	3	1	1		1				
지방열관리운영주사보	1	1							
<b>8급 소계</b>	<b>225</b>	<b>115</b>	<b>3</b>	<b>43</b>	<b>7</b>	<b>57</b>	<b>4</b>	<b>36</b>	<b>17</b>
지방행정서기	45	24	3		1	17	2	8	7
지방세무서기	10	9				1		1	
지방사회복지서기	10	4				6		6	
지방사서서기	1				1				
지방공업서기	6	2		3	1				
지방농업서기	4			4					
지방녹지서기	2	2							
지방보건서기	4			4					
지방보건진료서기	3			3					
지방의료기술서기	8			8					
지방환경서기	2	2							
지방시설서기	19	10			1	8		8	
지방행정·전산서기	3	2		1					
지방행정·세무서기	9					9	1	4	4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	12	9				3		2	1
지방행정·사서서기	1				1				
지방행정·공업서기	7	7							
지방행정·농업서기	8	2		1		5	1	2	2
지방행정·녹지서기	2	2							
지방행정·보건서기	3					3		3	
지방행정·환경서기	3	3							
지방행정·시설서기	17	14				3		1	2
지방전산·보건서기	1			1					
지방공업·환경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	2			2					
지방보건·간호서기	7			7					
지방의료기술·간호서기	2			2					
지방환경·시설서기	1	1							
지방행정·세무·사회복지서기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	1	1							
지방행정·사회복지·간호서기	2	1		1					
지방행정·농업서기·농촌지도사	1	1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	1	1							
지방행정·보건·간호서기	1			1					
지방행정·시설·방재안전서기	1	1							
지방보건·의료기술·간호서기	2			2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운전서기	8	8							
지방위생서기	6	1		2	1	2		1	1
지방전기운영서기	1	1							
지방기계운영서기	3	2			1				
지방열관리운영서기	1			1					
지방사무운영서기	2	2							
<b>9급 소계</b>	<b>143(1)</b>	<b>63(1)</b>	<b>3</b>	<b>14</b>	<b>15</b>	<b>48</b>	<b>6</b>	<b>25</b>	<b>17</b>
지방행정서기보	26(1)	8(1)		2		16	2	10	4
지방사회복지서기보	11	3				8	2	2	4
지방사서서기보	1				1				
지방공업서기보	2	1			1				
지방농업서기보	2			1		1		1	
지방녹지서기보	1	1							
지방보건서기보	2			2					
지방환경서기보	2	2							
지방시설서기보	2	1				1	1		
지방행정·세무서기보	4	1				3		2	1
지방행정·전산서기보	1	1							
지방행정·사회복지서기보	7	1				6		1	5
지방행정·사서서기보	1				1				
지방행정·공업서기보	3				3				
지방행정·농업서기보	5					5		5	
지방행정·보건서기보	1			1					
지방행정·환경서기보	2	2							
지방행정·시설서기보	7	6				1		1	
지방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보건서기보	1	1							
지방사회복지·시설서기보	1	1							
지방사서·공업서기보	1				1				
지방보건·의료기술서기보	3			3					
지방행정·농업·시설서기보	1					1		1	
지방행정·농업·방재안전서기보	1	1							
지방행정·녹지·시설서기보	1	1							
지방행정·전산·방송통신서기보	1				1				
지방보건·식품위생·의료기술서기보	1			1					
지방속기서기보	2		2						
지방운전서기보	25	20	1	2	2				
지방위생서기보	6	1				5		2	3
지방시설관리서기보	1	1							
지방건축운영서기보	1	1							
지방통신운영서기보	1			1					

(별표3)

구 분	총계	본청	의회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			
						계	읍	면	동
지방기계운영서기보	1					1	1		
지방사무운영서기보	14	8		1	5				
<b>연구직 계</b>	<b>7</b>	<b>6</b>		<b>1</b>					
지방학예연구사	4	4							
지방기록연구사	1	1							
지방농업연구·녹지연구사	1			1					
지방기록연구사·행정주사보	1	1							
<b>지도직 계</b>	<b>30</b>	<b>2</b>		<b>28</b>					
<b>지도관 소계</b>	<b>3</b>			<b>3</b>					
지방농촌지도관·행정·농업사무관	1			1					
지방농촌지도관·농업사무관	2			2					
<b>지도사 소계</b>	<b>27</b>	<b>2</b>		<b>25</b>					
지방농촌지도사	23	1		22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	1			1					
지방농촌지도사·행정주사보	1			1					
지방농촌지도사·농업주사보	1			1					
<b>별정직 계</b>	<b>2</b>	<b>2</b>							
6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7급 상당 소계	1	1							
비서요원	1	1							

※ 괄호()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